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은 1,800만원 이내로 하며,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관련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입니다.

Q)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계약자의 사망,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저축보험 납입완료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1 \text{ 현재 연금채원평가 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120\%$$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다만, 계약자가 분리과세하려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 됩니다.

Q. 다른 연금저축계좌로의 계약 이전이 가능한가요?

A) 계약자는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함)

이 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율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5.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6년 12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지급(정액형))
- 확정연금형(10년, 15년, 20년)

2.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10년, 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가입 단위
5년납	5년	0세 ~ (Y- 5)세	매월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00원
	6년		매월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7년이상		매월 12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년납	10년이상	0세 ~ (Y-10)세		
15년납	15년이상	0세 ~ (Y-15)세		
20년납	20년이상	0세 ~ (Y-20)세		
전기납		0세 ~ (Y- 5)세 (다만, 가입나이 (Y-9세)에서 (Y-6세)는 가입불가)		

다만, 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연금지축추가납입특약 이외의 특약의 보험료는 연간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4.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5. 연금지급개시나이(Y)

만 55세 ~ 80세

※ 다만, 피보험자가 55세 계약해당일에 만55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를 56세부터 선택할 수 있음

6. 건강진단여부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계약 유무, 나이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등에 의해 건강 진단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1. 상품구성

-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
- +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단체취급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연금	종신연금형 (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10년, 15년, 20년)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채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10.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 발생하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¹⁾와 운용자산이익률²⁾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적립이율은 연복리 2.15%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장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601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4.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사망률	
	남자	여자
50세	0.00115	0.00051
60세	0.00182	0.00064
70세	0.00377	0.00131

※ 가입연령 40세 기준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 종류별, 연도별 계약자 배당기준율 예시

Q.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FY '21		FY '22		FY '23		FY '24		FY '25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이자율차배당(A)	2.7	19.2	2.5	15.7	2.5	5.5	2.9	3.1	2.7	3.4
위험률차배당(B)	-	-	-	-	-	-	-	-	-	-
사업비차배당(C)	-	-	-	-	-	-	-	-	-	-
장기유지특별배당	-	-	-	-	-	-	-	-	-	-
총 계		19.2		15.7		5.5		3.1		3.4

(주) 1. 퇴직보험을 제외한 자료임.

2. FY'25의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의 이자율차 배당 기준율은 2.7%임.

3. 산출기준

- 이자율차 배당률 = (이자율차배당기준율(A) -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 위험률차 배당률 = (1 - 경험생명표상 사망률(성별·연령별) × 회사별률(B) / 보험료산출시 사용한 적용사망률(성별·연령별))

- 사업비차 배당률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 사업비차배당기준율(C))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주계약 월보험료 30만원, 남자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단위 : 원)

구 분		최저보증이율 5년 이하 1.25%, 5년 초과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0.5%				적용공시이율 2.15% (2026년 1월 현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액 (C)	적립율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액 (C)	적립율 (C/A)
3개월	900,000	386,029	42.89%	831,529	92.39%	387,273	43.03%	832,773	92.53%
6개월	1,800,000	1,236,651	68.70%	1,665,651	92.54%	1,241,007	68.94%	1,670,007	92.78%
9개월	2,700,000	2,089,866	77.40%	2,502,366	92.68%	2,099,201	77.75%	2,511,701	93.03%
1년	3,600,000	2,945,674	81.82%	3,341,674	92.82%	2,961,855	82.27%	3,357,855	93.27%
2년	7,200,000	6,395,118	88.82%	6,725,118	93.40%	6,457,904	89.69%	6,787,904	94.28%
3년	10,800,000	9,886,856	91.54%	10,150,856	93.99%	10,027,698	92.85%	10,291,698	95.29%
4년	14,400,000	13,421,416	93.20%	13,619,416	94.58%	13,672,825	94.95%	13,870,825	96.33%
5년	18,000,000	16,999,332	94.44%	17,131,332	95.17%	17,394,902	96.64%	17,526,902	97.37%
6년	21,600,000	20,573,824	95.25%	20,639,824	95.55%	21,195,586	98.13%	21,261,586	98.43%
7년	25,200,000	24,183,402	95.97%	24,183,402	95.97%	25,076,564	99.51%	25,076,564	99.51%
8년	28,800,000	27,811,278	96.57%	27,811,278	96.57%	29,022,731	100.77%	29,022,731	100.77%
9년	32,400,000	31,475,433	97.15%	31,475,433	97.15%	33,053,741	102.02%	33,053,741	102.02%
10년	36,000,000	35,176,229	97.71%	35,176,229	97.71%	37,171,417	103.25%	37,171,417	103.25%
15년	54,000,000	53,383,108	98.86%	53,383,108	98.86%	59,402,076	110.00%	59,402,076	110.00%
20년	72,000,000	72,049,734	100.07%	72,049,734	100.07%	84,127,526	116.84%	84,127,526	116.84%

※ 상기 공시이율가정 해약환급금 및 적립액은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 변동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금액으로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가 납입해당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란?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작성기준 : 남자3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30만원, 20년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32%	0.06%	0.06%	0.00%	0.00%	0.44%

※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향후 지급되는 것을 추정한 수치이며, 예시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판매채널(금융기관대리점)별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안내표(주계약 기준)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3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20년납)

1년~7년	8년~10년	11년~20년	20년 이후
7.8%	6.5%	5.0%	1.0%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80% (8,400원) 7년 초과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45% (4,35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5.00% (15,000원) 20년 초과 : 기본보험료의 1.00% (3,000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단위 : 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396,000	330,000	264,000	198,000	132,000	66,000	-	-
해약공제비율	11.0%	4.6%	2.4%	1.4%	0.7%	0.3%	0.0%	0.0%

주) 해약공제금액은 해지시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시 계약자적립액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주)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주)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합니다.